공동구매 미수금 처분사항

1. ㈜에이치케이조선 공동구매 미수금 사항

가. 2021.01월 강판 공동구매신청 (총432,552kg, 강판대금 ₩419,423,400.-)

강판대 미수금	법원 '지급명령' 확정판결에 따른 회수 금액(동산, 부동산)	최종 공동구매 미수금
277,481,060원	6,808,484원 ('23.01.18일, 광주법원 목포지원 '종국')	270,672,576원

2. 공동구매미수금에 대한 본 조합 대손상각 처리사항

공동구매 총미수금	2023년도 공동구매미수금 대손상각 처분액	2024년도 대손상각액 (예정)	비 고
270,672,576원	170,672,576원	100,000,000원	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함

3. 공동구매사업 운영규정 개정 현황

가. 제333차 이사회 (2022.04.28.) 개정

개정전	개정후	비 고
제6조(채권보전) 조합을 통한 공동구매사업과 사업자금지원에 대한 채권보전은 다음과 같은 보증증서를 사전에 징구함으로써 이를 보전한다. 1. (현행과 동일) **2. 조합지불보증에 의한 공동구매계약시** ① 외화는 L/C개설시 10%보증금(또는 선수금)은 자기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90%는 해당 조선소의 당좌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(조합원이서)을 징구한 후 지불보증 한다. ② 내자를 전액 자기자금으로 공동구매계약시 10% 보증금(또는 선수금)을 납입하고 공동구매 총액에 해당하는 당좌수표나 은행도 약속어음을 **징구한다.**	**제6조(채권보전)** 조합을 통한 공동구매사업과 사업자금지원에 대한 채권보전은 다음과 같은 보증증서를 사전에 징구함으로써 이를 보전한다. 1. (현행과 동일) **2. 조합지불보증에 의한 공동구매계약시** ① (삭제) **① 내자를 전액 자기자금으로 공동구매계약시 10% 보증금(또는 선수금)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90%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수취한다.**	국가계약법시행령에 명시된 보증서 납부방법을 추가하고, 동 규정에서 명시한 보증서 등을 수취한 후 지불보증 하는 것으로 규정 개정

※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2항 : 금융기관 지급보증서, 보험회사 보증증권, 공제조합 보증서 등